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 토론자료*

2014. 4. 9

전주용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Disclaimer: 본 발표는 한국은행 혹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공식적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발표 주요 내용

● 정보 주체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

- 주로 금융 소비자의 신용 정보(credit risk관련)는 물론 거래, 개인 정보 등 포괄적인 개인 정보의 보유, 공유, 관리 주체 결정에 관련된 문제 논의
- 전반적 금융 정보에 대한 금융 소비자 자기 결정권 및 금융사 책임 강화라는 정책 방향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 내용 및 전부 개정 법률안) 소개
- 상시 감독 시스템 및 정보보호 네트워크 구축 제안

● 신용평가 체계 개선

- 주로 기업 및 자산의 신용 등급 산정 체계 관련 문제
- 평가 대상이 평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오는 이해관계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소개
 - 감독기관에 의한 CRA 감독(미국, EU), 자발적 신용평가기관 지정제, subscriber-based CRA 도입 등

→ 본 토론은 개인 정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

특성에 따른 정보의 분류

- **Complements vs. Substitutes (a la Blackwell)**

- Information의 공유가 다른 information 의 필요성을 촉진 vs. 감소

- **Hard vs. Soft (a la Petersen)**

-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 수집, 생성, 비교 가능 여부

- **Complex vs. Simple (a la Shannon)**

- The (typical) number of bits needed to remove the uncertainty*

* It is actually a definition of entropy in information theory.

“Hardening” of Information (Petersen, 2004)

- **정보의 정량화, 단순화, 비교가능성 증가**
 - 신용 평가에 따른 점수/등급 부여가 가장 전형적인 예
-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복잡도가 높고 비체계적인 정보의 처리 능력 증가에 기인**
 - Soft information에 기반한 전통적 관계 금융의 후퇴 및 FinTech 기반 P2P 금융 부상

금융 거래에서의 위험과 신용 정보

- **신용(금융) 거래에서의 위험**(Roberds and Schreft, 2009)
 - 약정 시점에 약정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 (default risk)
 - 타인 혹은 가상의 인물로 정체성을 위장한 거래로 인한 위험 (fraud risk, 비대면 거래에 존재)
- **개인 정보와 신용 정보**
 - $f(\text{개인정보}, \text{거래정보}) \rightarrow \text{신용정보}$
 - 신용정보는 특히 club good(non-rival, exclusive)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반면, 다수의 개인 정보는 privacy의 영역에 해당
 - Default risk 정보만 반영된 신용정보는 fraud에 활용되는 것은 어려움
 - 반면, 신용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개인 정보 및 거래정보는 타 용도로도 이용 가능 \rightarrow fraud 활용 가능성 증가

신용정보 공유

- **신용정보의 공유 목적**
 - 정보 공유를 통한 잠재적 차입자의 credit risk 예측 정확도 증가
 - 신용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
 - “Efficient confidentiality” (Swire, 2003)
- **정보의 대체 vs. 보완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 공유 효과**
 - 정보(signal)가 보완 관계일 경우
 - (Hard) information의 공유는 (soft) information 생산 촉진
 - 정보가 상호 대체 관계일 경우
 - 신용정보 공유를 통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비용 감소
 - 자체 정보 생산 동기 감소 및 묵시적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
- **“Hardening”이 정보 공유에 미치는 효과**

신용정보 공유와 정보 보호

- **공유되는 신용 정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용성을 유지할 필요**
 - 만일 아닐 경우, 개별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국 개인정보 보호에 악영향
 - 또한, 개별 기관이 생성한 신용정보의 분산이 높을 경우 이자율 쇼핑 동기 강화 → 비 효율적 자원배분(cf. Winner's curse)

정책 방향 및 고려 사항 (1/2)

● 단계별 개인 정보 보유 및 공유 범위 규정 확립

- 개인정보, 거래정보, 신용정보 등의 granularity에는 차이 존재
- 단계별 보유 및 공유 범위 규정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 제고 및 신용정보 이용과 (개인정보 보유가 필요한) 생산의 분리 유도
→ 개인식별(personal identification)에서 거래식별(transactional identification)로 (Roberds and Schreft, 2009)
→ 신용정보처리자의 역할 중요
- 단계별 정보 보유 최소성(parsimony) 원칙을 적용하여 fraud risk 및 유사 시 cascading failure 범위 축소
-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시 필요 (e.g.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정책 방향 및 고려 사항 (2/2)

● 사후 규제의 강화

-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된 반면, 사전 규제 및 감시 체계 구축에 따른 어려움 및 비용 또한 증가
- 또한 사전 규제는 자칫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발적인 비신용 개인정보의 제거(예: tokenization) 및 비식별화된 개인 정보 활용을 통한 정보 유용성 증가 시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부분 개정 신용정보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후 규제 강화라 볼 수 있음
- 다만, 단계별로 수집이 허용되거나 금지되어야 할(예: 인종, 가족관계 등. OECD 자료 참조) 개인 정보들에 대한 사전 규제는 필요

참고문헌

Börgers, T. (2009) "Notes on Blackwell's Comparison of Experiments"

Braverman, M. (2013) "Basics of information theory and information complexity: a tutorial"

OECD "Discussion Paper on Credit Information Sharing"

Petersen, M.A. (2004) "Information: Hard and Soft"

Roberds, W. and Schreft, S.L. (2009) "Data security, privacy, and identify theft: the economics behind the policy debates," Economic Perspectives,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Thank you very much !!